#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89 발의연월일: 2021. 12. 3.

발 의 자: 박상혁 · 김정호 · 김주영

송옥주 · 안호영 · 어기구

이용빈 · 이용호 · 임오경

진성준 의원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를 화물의 저장·관리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과 4,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된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시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신설).

#### 법률 제 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2 중 "보관시설"을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정한다)"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제 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기준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	5의2
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	
정 등을 위한 <u>보관시설</u> ·보관	<u></u> 보관시설(주
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
한다.	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
	<u>설을 포함한다)</u>
5의3. ~ 11. (생 략)	5의3. ~ 11.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	
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2.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1
<u>산정한다).</u>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바닥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u>아니한다.</u>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b>4</b>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 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 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 다.

- 1. 2. (생략)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 른 축산물보관업 및 <u>「식품산</u> 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 공업 중 냉동·냉장업

⑤ (생략)

,
1.•2. (현행과 같음)
3
3
<u></u> 「수산식
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⑤ (현행과 같음)